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729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김민전 • 유용원 • 김성원

김태호 · 조정훈 · 이종배

김기웅 • 우재준 • 박준태

조경태 · 김위상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너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(1명), 35만원(2명), 65만원(3명)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.72명을 기록하였고,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(1명), 65만원(2명), 105만원(3명)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, 출산·입양 신고 공제대

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 (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"15만원"을 "3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35만원"을 "65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35만원"을 "65만원"으로, "30만원"을 "4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30만원"을 "60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50만원"을 "80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70만원"을 "100만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종합	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
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	
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	
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	
이하 이 조에서 "공제대상자	
녀"라 한다) 및 손자녀로서 8	
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	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	
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	
한다.	<u>.</u>
1. 1명인 경우: 연 <u>15만원</u>	1 <u>30만원</u>
2. 2명인 경우: 연 <u>35만원</u>	2 <u>65</u> 만원
3. 3명 이상인 경우: 연 <u>35만원</u>	3 <u>65만원</u>
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	
<u>30만원</u> 을 합한 금액	<u> 40만원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	③
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	
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	
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	
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<u>.</u>
1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	1
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:	

연	30민	원

- 2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:연 <u>50만원</u>
- 3.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 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 우: 연 <u>70만원</u>

④ (생 략)

- <u>60만원</u>
2
- <u>80만원</u>
3
<u>100</u> 만원
④ (현행과 같음)